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2709.00란을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합병 등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합병 등기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 등기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9]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비석유화학 용으로 판매되	0	170,000,000 배럴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u>는 경우 그 주. 부산물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u>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 율 및 한계수량은 <u>별표 1부터 별 표 8까지</u> 와 같다.	----- ----- ----- <u>별표 1부터 별 표 9까지</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1